[참고2] 채용 취소 규정

※ 경기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정 제15조(채용결정의 취소)

제15조(채용결정의 취소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또한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.

1.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
2.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
3. 제14조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
4.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